

관리번호 : ISO-I-01
담당부서 : 기획운영과
개정연월 : 2020. 09. 29.



항공기상업무 기본지침

개정 이력 AMENDMENTS

개정번호	개정연월일	주요 개정내용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기상업무지침 제9차 개정판(2016.3.3.일부개정)으로 사용
0	2016.1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O 9001:2015 도입에 따른 업무기준 제정 ▪ ICAO 부속서3 제77차 개정판 적용
1	2017. 8.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3 재번역 결과에 따른 내용 수정 ▪ 항공기상업무규정(기상청 훈령 제869호, 2017.3.31.) 제정에 따른 중복 내용(제2장 항공기상업무기관의 구분) 삭제 ▪ 국토교통부 업무인 ‘항공고시보(NOTAM) 작성’ 관련 내용 삭제 및 참고사항으로 국토교통부 고시 명시 ▪ 항공고시보(NOTAM) 의뢰서 양식에 의뢰 종류, 의뢰 기관, 수신 기관 및 확인 추가 ▪ 그 외 일부 오류사항 수정
2	2020. 09.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용어 변경(“윈드시어” → “급변풍(Wind Shear)”)

차 례

Table of Contents

제1장 총 칙 (General provisions)	1
1.1 항공기상업무의 목적 (Objectives of meteorological services)	1
1.2 항공기상업무의 의무 (Obligation for meteorological services)	1
1.3 항공기상업무에 관한 임무와 역할 (Tasks and role for meteorological services)	1
제2장 항공기상정보 제공을 위한 요건 (Requirements to supply aeronautical meteorological information)	1
제3장 항공기상청과 유관기관 간 협정 (Agreement between Meteorological Authority and Appropriate Authority)	2
3.1 항공기상청과 항공교통업무당국 간 합의서 (Arrangement between ATS Authority and Meteorological Authority)	2
3.2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제공하는 기상정보 (Information to be provided for air traffic services unit)	2
3.2.1 관제탑용 정보 목록 (List of information for the aerodrome control tower)	2
3.2.2 접근관제소용 정보 목록 (List of information for the approach control tower)	2
3.2.3 지역관제센터/비행정보센터용 정보 목록 (List of information for the area control center/flight information center)	3
3.2.4 기타 정보제공 및 정보의 형식 (Supply and content of Information)	3
3.3 수색 및 구조 업무기관에 제공하는 기상정보 (Information to be provided for search and rescue services unit)	3
3.3.1 정보 목록 (List of information)	3
3.3.2 요청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 (Information to be provided on request)	4
제4장 항공정보업무 (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	4
4.1 항공정보업무기관용 정보 목록 (List of information for 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s unit)	4
4.2 항공고시보 (NOTAM)	4
4.3 항공고시보 의뢰 (Request of NOTAM)	4
[붙임] 항공고시보 의뢰 양식 (Form of NOTAM request)	5

제1장 총 칙 (General provisions)

1.1 항공기상 업무의 목적 (Objectives of meteorological services)

- 1.1.1 항공기상 업무는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 규율성, 효율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1.2 이런 목적은 운항자 및 운항승무원, 항공교통업무기관, 수색구조업무기관, 공항관리자 및 기타 관련 기관에 각각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달성된다.

1.2 항공기상 업무에 관한 의무 (Obligation for meteorological services)

- 1.2.1 항공기상 업무는 통일된 규정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는 분야로, 세계기상기구 및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사항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
- 1.2.2 항공기상청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 간의 차이점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통보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1.3 항공기상 업무에 관한 임무와 역할 (Tasks and role for meteorological services)

- 1.3.1 항공기상청은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정보 이용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 1.3.2 이용자에게 제공된 기상정보는 인적요소 원칙과 일치해야 하며, 이용자가 최소한의 해석을 통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1.3.3 항공기상청은 기상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이용자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협의를 실시해야 한다.

제2장 항공기상정보 제공을 위한 요건 (Requirements to supply aeronautical meteorological information)

- 2.1 기상업무를 필요로 하거나 기존의 기상업무를 변경하고자 하는 운항자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항공기상청에 알려야 하며, 사전 고지에 필요한 기간은 협의에 의한다.
- 2.2 기상업무를 필요로 하는 운항자는 다음의 경우 항공기상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가. 신규 노선 또는 새로운 운항 계획을 세웠을 때
 - 나. 정기운항에 관해 지속적인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 다. 기상업무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변경 계획을 세웠을 때이 정보에는 항공기상청이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2.3 항공기상청이 이용자와 협의하여 요구할 경우, 운항자 또는 승무원은 다음 사항을 항공기상청에 보고해야 한다.
 - 가. 비행 스케줄
 - 나. 부정기 항공편이 운항될 때
 - 다. 항공편이 앞당겨지거나, 지연 또는 결항될 때
- 2.4 정기 비행편인 경우, 합의에 따라 다음의 정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고, 부정기 비행편은 다음의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 가. 출발 공항 및 출발 예정시간
- 나. 목적지 및 도착 예정시간
- 다. 비행 항공로 및 중간 기착지에 대한 도착 및 출발 예정시간
- 라. 비행에 필요하며 지역항공항행계획에 수록된 목록 중에서 선정한 교체공항
- 마. 순항고도
- 바. 비행의 종류(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 사. 운항승무원에게 필요한 기상정보의 종류(비행예보철, 브리핑 또는 자문)
- 자. 브리핑, 자문 또는 비행예보철이 필요한 시간

제3장 항공기상청과 유관기관 간 협정 (Agreement between meteorological authority and appropriate authority)

3.1 항공기상청과 항공교통업무당국 간 합의서 (Arrangement between Air Traffic Service Authority and Meteorological Authority)

기상지원을 위한 항공교통업무당국과의 합의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 가.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합자동화시스템에 관련된 표출장치의 제공 및 보정, 유지보수
- 나. 항공교통업무요원에 의한 표출장치의 사용
- 다. 당해 공항에 유용한 기상정보 추가
- 라. 이착륙 항공기로부터 받은 비정기 항공기 관측보고의 사용
- 마. 가능하면, 지상의 기상레이더로부터 입수한 기상정보

3.2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제공하는 기상정보 (Information to be provided for air traffic services unit)

- 가. 항공기상청은 항공교통업무기관을 지원할 적합한 기상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 나. 기상관서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최신 기상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다. 하나의 임무를 둘 이상의 기상관서가 분담하는 것이 편리한 곳의 책임 분할은 관계 항공교통업무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라. 항공기에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항공교통업무기관이 기상정보를 요청할 때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3.2.1 관제탑용 정보 목록 (List of Information for the aerodrome control tower)

- 가. 해당 공항의 관측(MET REPORT, SPECIAL, METAR, SPECI)
- 나. 해당 공항의 예보(TAF, 착륙예보) 및 그에 대한 수정예보
- 다. SIGMET 및 AIRMET정보
- 라. 해당 공항의 급변풍(Wind Shear) 경보와 경고 및 공항경보
- 마. 국지적으로 합의된 추가 기상정보
- 바. SIGMET정보가 발표되지 않은 화산재 구름에 관하여 입수한 정보
- 사. 분출 전 화산활동 및 분출된 화산활동에 관해 수신한 정보

3.2.2 접근관제소용 정보 목록 (List of Information the approach control tower)

- 가. 해당 공항의 관측(MET REPORT, SPECIAL, METAR, SPECI)

- 나. 해당 공항의 예보(TAF, 착륙예보) 및 그에 대한 수정예보
- 다. SIGMET 및 AIRMET정보, 관련 공역의 특별 항공기 보고
- 라. 해당 공항의 급변풍(Wind Shear) 경보와 경고 및 공항경보
- 마. 국지적으로 합의된 추가 기상정보
- 바. SIGMET정보가 발표되지 않은 화산재 구름에 관하여 입수한 정보
- 사. 분출 전 화산활동 및 분출된 화산활동에 관해 수신한 정보

3.2.3 지역관제센터/비행정보센터용 정보 목록 (List of Information for the ACC/FIC)

- 가. 공항 및 다른 지역에 대한 기압 자료가 포함된 METAR, SPECI
- 나. 비행정보구역/관제구역에 포함된 공항의 예보(TAF, 착륙예보) 및 그에 대한 수정예보
- 다. 지역관제센터/비행정보센터에서 요구할 경우 이웃 비행정보구역에 포함된 공항의 예보(TAF, 착륙예보) 및 그에 대한 수정예보
- 라. 상층바람, 상층기온, 중요기상예보와 그에 대한 수정예보
- 마. SIGMET 및 AIRMET정보, 관련 공역의 특별 항공기 보고
- 바. 기타 지역관제센터/비행정보센터가 필요로 하는 다른 기상정보
- 사. SIGMET정보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화산재구름에 관하여 입수한 정보
- 아. 대기 중으로 방사성 물질 방출사고에 관하여 입수한 정보
- 자. 관련 열대저기압주의보센터(TCAC)에서 발표한 열대저기압주의보 정보
- 차. 관련 화산재주의보센터(VAAC),에서 발표하는 화산재주의보 정보
- 카. 분출 전 화산활동 및 화산분출에 관해 수신한 정보

3.2.4 기타 정보제공 및 정보의 형식 (Supply and content of information)

- 가. 비행정보 목적에 필요한 경우, 현재 기상 및 예보를 지정된 항공통신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의 사본은 필요할 경우 지역관제센터/비행정보센터에 보내야 한다.
- 나. MET REPORT, SPECIAL, METAR, SPECI, TAF, 착륙예보, SIGMET/AIRMET 정보, 상층풍 및 상층기온 예보와 그에 대한 수정사항은 준비되는 대로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제공되어야 한다. 이 정보들은 지역별로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다른 기상관서 또는 기상감시소에 배포하거나 다른 기상관서와 기상감시소에서 수신해야 한다.
- 다. 컴퓨터 처리된 격자점용 상층대기자료가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항공교통업무컴퓨터에서 만들어지면, 그 내용, 형식, 전송방식은 합의 되어야 한다. 예보에 대한 처리가 완료된 후 가능한 한 신속히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3 수색 및 구조업무기관에 제공하는 기상정보 (Information to be provided for search and rescue services unit)

항공기상청은 수색 및 구조업무 기관이 필요한 기상정보를 상호 합의된 형태로 제공해야 하며, 수색 및 구조 작전 내내 수색 및 업무기관과 연락을 유지하여야 한다.

3.3.1 정보 목록 (List of Information)

수색 및 구조업무기관에 제공되는 정보에는 실종 항공기의 마지막 확인 위치와 그 항공기의 예정 경로에 존재하였던 기상상태가 다음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 가. 항공로 상의 중요기상현상
- 나. 운량과 운형, 특히 적란운의 경우 운저와 운정 고도
- 다. 시정과 시정장애현상
- 라. 지상풍과 상층풍
- 마. 지면 상태, 특히 적설 또는 홍수
- 바. 해수면 온도, 바다의 상태, 해빙(존재한다면), 해류(수색지역과 관련이 있는 경우)
- 사. 해수면 기압자료

3.3.2 요청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 (Information to be provided on request)

- 가. 실종 항공기에 제공된 비행예보철의 세부 정보와 비행 중 항공기에 전송된 예보에 대한 수정사항
- 나. 수색구조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제공
 - 1) 수색지역에서의 현재 및 예상 기상상태에 대한 완전하고도 상세한 정보
 - 2) 항공기가 수색 장소와 공항을 왕복하는데 필요한 항공로 상 현재 및 예상 기상상태
- 다. 수색구조작업을 진행하는 선박이 요청하는 기상정보를 제공하거나 준비

제4장 항공정보업무 (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

4.1 항공정보업무기관용 정보 목록 (List of Information for 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s unit)

항공기상청은 필요한 경우, 항공정보업무기관에 다음의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 가. 항공정보간행물에 포함되어야 할 국제항공항행용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
- 나. 항공고시보(NOTAM) 및 화산재고시보(ASHTAM) 작성에 필요한 정보, 특히 다음 정보를 포함한다.
 - 1) 항공기상 업무의 운영에 있어서의 부서의 설치, 철수, 중요한 변경
 - 2) 화산활동의 발생
 - 3) 대기 중으로 방사성 물질 방출사고
- 다. 특히 다음 정보를 포함하여 항공정보회람 작성에 필요한 정보
 - 1) 항공기상업무절차, 제공되는 업무 및 시설에서의 예상되는 중요한 변경
 - 2) 특정 기상현상이 항공기 운항에 미치는 영향

4.2 항공고시보 (NOTAM)

항공고시보는 비행업무 관련 종사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항공시설·업무·절차 또는 위험의 상태·변경·신설 등에 관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공고문을 전송으로 배포하는 고시보를 말한다.

참고-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4.3 항공고시보 의뢰 (Request of NOTAM)

관측장비 또는 통신장비의 결함이나 고장으로 인하여 항공기상 정보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못할 경우 즉시 해당 공항 항공고시보 취급소에 항공고시보 발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항공고시보 (발행, 해제) 의뢰서

- 부서/기관: 김포공항기상대
- 일시: 0000. 00. 00. 00:00

해 당 위 치 또는 해 당 지 역	
고 장 발 생 시 각	. . . UTC . . . KST
정 상 가 동 예 정 시 각	. . . UTC . . . KST
정 상 가 동 시 각	. . . UTC . . . KST
항공 고시보 의 례 내 용	
수 신 기 관	<i>김포항공관리소 항공정보실 TEL. 02-0000-0000 FAX. 02-0000-0000</i>
수 신 확 인	<i>(전화, 방문) 00. 00. 00:00 홍길동</i>